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장관)
연 월 일	20 . . .

법 제 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시행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5분 이상의 운행 지연과 와이어로프 단선, 차량 탈선, 구동부 고장, 차량 역주행 등 궤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운행장애의 세부 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의2)
- 나. 허가 신청 서류에 궤도시설의 연결장치 안전성 검증 서류, 차량의 구조 확인서를 추가하여 안전 검증을 강화함(안 제3조)
- 다. 준공검사 신청서류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구체화 및 추가 보완하고, 지자체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별표4)
-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신규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함(안 제20조)
- 마. 부상자 기준을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 보고 후 72시간 내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고조사 업무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

바.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점검내역 등을 시스템에 등록 시 행정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사.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설비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아. 점검·정비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정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존 운전자 자격기준을 자체교육 이수로 완화하며, 왕복식 삭도 사업자는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차장 탑승 의무 제외(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의2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장애”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운행지연과 제2호에서부터 제9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1. 운송 중 사람을 태운 채 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된 경우
2. 와이어로프 단선, 열화 등 손상
3. 긴장(유압)장치 장력 이상
4. 와이어로프 또는 차량의 탈선
5. 연결장치의 불완전한 물림
6. 지주, 수(압)삭장치 등 선로상 설비의 손상
7. 구동부 고장
8. 차량 역주행
9. 제2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장애로서 중대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제5항제2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연결장치 안전성 인증서류

타. 차량의 구조확인서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게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영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퇴직신고를 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임·퇴직의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제3항 중 “영 제9조제4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를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사망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로 보고해야 하며, 이후 72시간 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

20호서식의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조사 업무를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검사전문기관은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 운전·정비 기술인력 현황
2. 궤도운행시간 및 탑승현황 등 운행정보
3. 종사자 교육이력 정보
4. 안전관리계획서 정보
5. 운행장애에 대한 정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시 그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안전검사를”을 “시험운행·준공검사·안전검사를”로,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을 “시험운행·준공검사·안전검사업무를 위
 탁 또는 의뢰한”으로, “위탁을”을 “위탁 또는 의뢰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
 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인력 기준	검사책임자 (2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 토목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후 궤도시설의 공 사·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교통안전법」 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의 자격을 가진 후 궤도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사람
	검사원 (4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후 궤도시설의 공사·유 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 는 사람

별표 1의 시설기준의 버니어캘리퍼스의 보유기준 중 “1개”를 “2개”로 하

고, 각도측정기, 스톱워치 및 접지저항계의 보유기준 중 “1개”를 각각 “2개”로 하며, 절연저항계의 보유기준 중 “1개”를 “2개”로 하고, 전류계의 보유기준 중 “1개”를 “2개”로 하며, 줄자의 보유기준 중 “1개”를 “2개”로 하고, 멀티테스터 및 광파거리측정기의 보유기준 중 “1개”를 각각 “2개”로 하며, 시설기준의 광파거리측정기란 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진동장비, 슬립테스터기, 와이어로프테스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 명	규 격	보 유 기 준
열화상카메라		2개 이상
진동장비	FFT분석기	2개 이상
슬립테스터기		2개 이상
와이어로프테스터기	비파괴검사용	2개 이상

별표 2의 구분 중 “운전자”를 “궤도운송종사자”로 하고, 안전수칙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궤도운송종사자의 자격 및 인력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운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운전자 교육을 받은 후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운행 중에는 정해진 위치를 떠나서는 안된다.

나. 점검·정비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 1) 삭도: 기계·전기·전자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
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 2) 궤도: 기계·전기·전자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

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의 자격

다. 점검·정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점검·정비자 교육을 받은 후에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정비 책임자를 포함하여 다음의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1) 삭도: 3명 이상, 추가 선로당 1명

2) 궤도: 1명 이상, 선로길이가 1km 초과당 1명

별표 2에 차장의 탑승의 안전수칙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임시검사”를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임시검사명령”을 “수시검사명령”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안전관리계획서 세부내용(제9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1. 안전목표	가. 안전관리 목표수립 및 실적 나.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내역
2. 자체 점검·정비계획	가. 자체 점검계획(일상·정기점검, 안전검사) 나. 주요부 분해점검 주기 다. 연결장치 특별유지보수 절차 라. 점검·정비, 분해점검(오버홀) 계획 및 이행현황
3. 부품관리계획	가. 자체 부품관리계획 나. 부품관리대장 다. 부품구매 계획 및 실적
4. 종사자의 인력확보·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적정 인력확보 계획(분야별 적정 인력) 나. 인력운영기준(종사자 정의, 자격, 경력) 다. 종사자 교육일지 라. 종사자 현황(분야별 명단 및 자격) 마. 종사자 교육계획 및 실적
5.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매뉴얼	가. 사고 시 조치매뉴얼(보고체계, 사고보고 양식 등) 나. 화재·정전·고장 시 대응 시나리오 다. 비상원동기 가동 매뉴얼 라. 구난구조 매뉴얼 마.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구조반 편성 바. 비상 조치훈련 계획 및 실적
6. 운영매뉴얼	가. 상황별 운행지침(강풍, 폭우, 폭설, 야간 등) 나. 운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가. 폐쇄회로(CCTV) 자료관리 나. 운행일지, 로그 등 자료관리 다. 점검일지, 정비일지, 작업보고서 등 관리 라. 보험 가입·갱신에 관한 사항
<비고> 1. “주요부(2-나)”란 “행거, 주행장치, 감기구동장치, 제동장치, 수(압)삭장치 및 유압긴장장치”를 말한다. 2.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작사 매뉴얼에 따라 주요부의 분해·점검 세부 주기를 마련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야 하며, 유지·보수 후에는 작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연결장치(2-다)에 대해서는 특별유지보수(분해검사 및 비파괴검사)의 세부 주기를 마련하고 연속적인 주기로 검사가 진행되도록 회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 호	
	사업 허가일	
	준공 연월일	
	공사준공사항	

「궤도운송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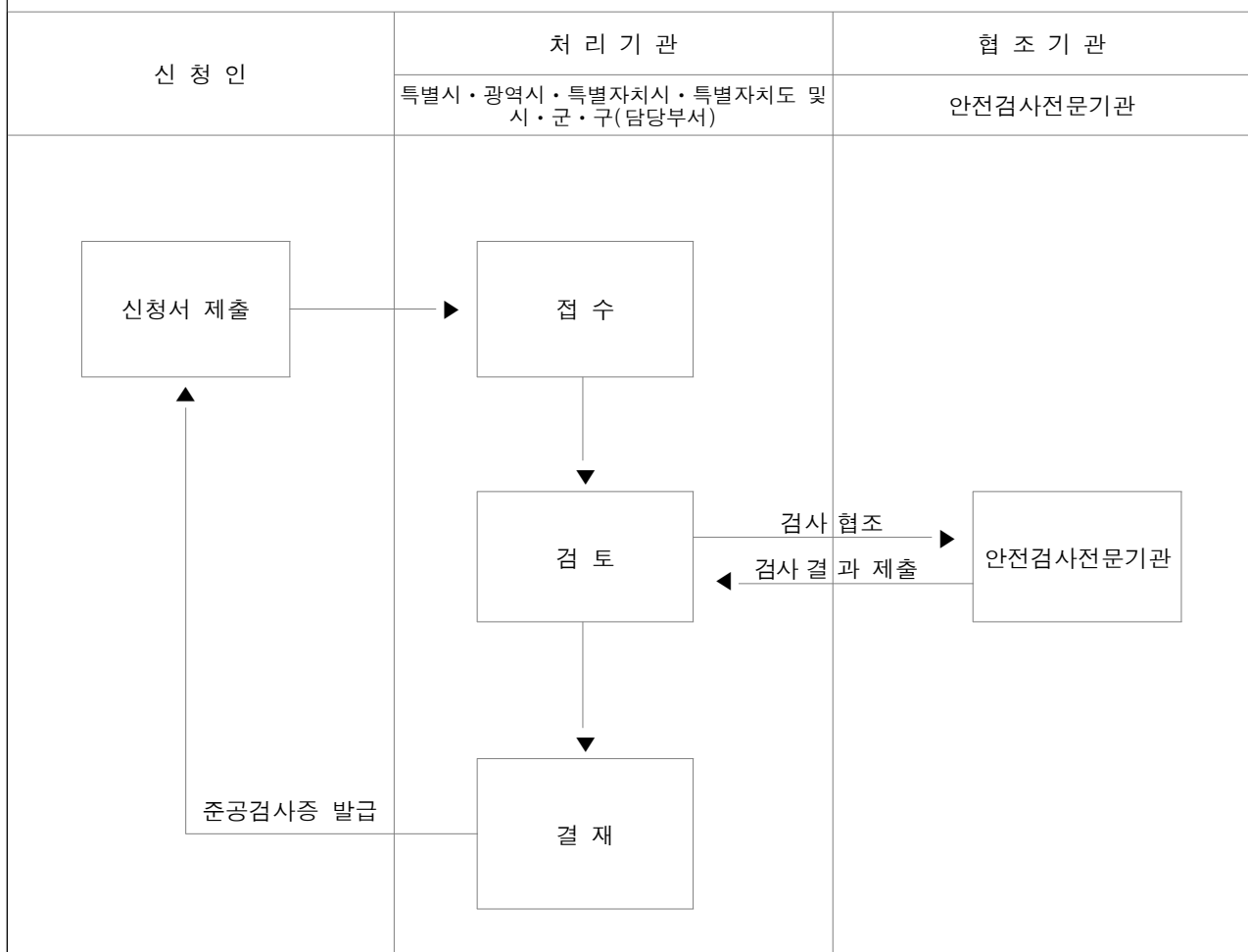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수료 2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궤도운송 사고보고서(제22조 관련)

보고일자: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성명:	(Tel: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안전관리책임자		
궤도현황	궤도종류			
	설치년도			
	승차정원 및 차량 수			
발생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발생장소				
관계차량	편성 량,	운행구간:		
피해사항	인명피해	명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시설(차량)피해			
	운행정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검사 현황	최종점검(보수)일		결과	
	최종검사일		결과	
사고분류				
사고원인				
사고개요				
사고조치				
비고	※ 사고관련 사진 등 필요한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의2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장애”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운행지연과 제2호에서부터 제9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u> <u>1. 운송 중 사람을 태운 채 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된 경우</u> <u>2. 와이어로프 단선, 열화 등 손상</u> <u>3. 긴장(유압)장치 장력 이상</u> <u>4. 와이어로프 또는 차량의 탈선</u> <u>5. 연결장치의 불완전한 물림</u> <u>6. 지주, 수(압)삭장치 등 선로상 설비의 손상</u> <u>7. 구동부 고장</u> <u>8. 차량 역주행</u> <u>9. 제2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장애로서 중대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제2조의2 (생 략)</u>	<u>제2조의3 (현행 제2조의2와 같음)</u>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제3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가. ~ 차. (생 략)

<신 설>

<신 설>

카. (생 략)

3. (생 략)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 점검·정비계획

2. 부품관리계획

3. 운전 및 점검·정비 등 안전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 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연결장치 안전성 인증서류

타. 차량의 구조확인서

파. (현행 카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

<신 설>

④ (생 략)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
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
임·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신 설>

<삭 제>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은 영 제4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
획의 적정성을 법 제20조에 따
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게 검토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케도
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는
영 제18조-----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
자의 해임·퇴직신고를 한 케도
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는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 설>

<신 설>

제21조(사고 시 조치) ①·② (생략)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9조제4항제2호에

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임·퇴직의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사고 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5조제1항제7호-----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신 설>

2. 3. (생략)

<신 설>

-----.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

-----.

1. 사망자-----

2.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로 보고해야 하며, 이후 72시간 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시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조사 업무를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검사전문기관은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

	<u>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u>1. 궤도시설 운전·정비 기술인력 현황</u> <u>2. 궤도운행시간 및 탑승현황 등 운행정보</u> <u>3. 종사자 교육이력 정보</u> <u>4. 안전관리계획서 정보</u> <u>5. 운행장애에 대한 정보</u> <u>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시 그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u> <u>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u>
<u>제23조의2</u> (생략)	<u>제23조의3</u>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생략)	제2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궤도시설에 대한 <u>안전검사를</u> 신청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② ----- <u>시험운행·준공검사·안전검사를</u> -----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u>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u> 경우에는 그 <u>위탁을</u>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2017년 1월 1일</u>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2. (생략)	----- ----- ----- ----- ----- <u>시험운행·준공검사·안전검사업무를 위탁 또는 의뢰한</u> ----- --- <u>위탁 또는 의뢰를</u> -----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 ----- <u>2024년 1월 1일</u>----- ----- ----- ----- -----. 1. 2. (현행과 같음)
---	---